
2021년 현지화 지원사업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보고

스 넥

중국 수출 시
수입통관 및 검역내용 사전검토 보고서

2021.03

- 품목분류: 일반농식품 O / 수산물 X / 신식품원료 X / 보건식품 X

- 수입 예정 국가 : 중국

- 자문 내역

1. 수입통관 사전검토

- 1) HS CODE 분류 기본 정보
- 2) FTA/APTA 특혜관세율 적용 가능 여부 및 FTA관세율 보기표

2. 검역내용 사전검토

- 1) 식품의 유형
- 2) 중국 GB 규정 확인 및 검역 항목 분석
- 3) 통관/검역 이슈 사항
- 4) 성분 검토

3. 최종 평가 및 권고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1. 통관 사전 검토

자문 내용	품목별 HS CODE 와 이에 따라 중국 내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MFN(최혜국 대우일반관세율)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개념)을 정보를 안내해 드리며, FTA (한-중 자유무역협정),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세율정보를 참고하여 당해 년도 가장 낮은 세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FTA나 APTA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한국 세관/상공회의소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S CODE는 품목에 따라 한국과 중국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품목과 맞지 않는 세번으로 신고할 경우 중국 해관에서 사후 심사를 통보하고 관세 추가 징수와 행정 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된 HS CODE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수입 신고 시 중국 해관에서 정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HS CODE 분류 기본 정보

분류	내용	비고
HS CODE	19041000.00	-
품목 분류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1904.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
MFN 관세율	2018/7/1 적용 최혜국 대우 일반관세율 (MFN) 25%→10%	-
증치세율	13%	관세지급필가격의 13%

2) FTA/APTA 특혜 관세율 보기표

품목명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HS CODE	19041000.00	
FTA 양허조건	20	
기준관세율(%)	25	
균등철폐세율(%)	1.25	
FTA 시행 연차	해당 연도	적용 관세율(%)
1 년차	2015 년 12 월 20 일	23.75
2 년차	2016 년	22.50
3 년차	2017 년	21.25
4 년차	2018 년	20.00
5 년차	2019 년	18.75
6 년차	2020 년	17.50
7 년차	2021 년	16.25
8 년차	2022 년	15.00
9 년차	2023 년	13.75
10 년차	2024 년	12.50
11 년차	2025 년	11.25
12 년차	2026 년	10.00
13 년차	2027 년	8.75
14 년차	2028 년	7.50
15 년차	2029 년	6.25
16 년차	2030 년	5.00
17 년차	2031 년	3.75
18 년차	2032 년	2.50
19 년차	2033 년	1.25
20 년차	2034 년	0.00
현행 아태무역협정	APTA	해당 없음

2021년도 관세율 비교		
MFN	FTA	APTA
10%	16.2%	해당 없음
본 품목은 2021년도 MFN 세율이 1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수출 시 "일반원산지 증명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검역내용 사전 검토

자문 내용	중국해관 신고 후 진행되는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시 적용되는 기준인 GB(국가표준) 안내
	중국식품안전법에 따른 첨가 불가 원료와 첨가제 유무 검토
	포장디자인에 기재 불가 내용이 있는지 검토
유의 사항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되지 않도록 중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참고하여 품질과 위생관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가 불가 원료와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서류검사에서 불합격되거나 정밀검사에서 특정첨가제 초과 검출로 불합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디자인에 불가성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불합격되거나 유통 시 악의적 투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의 유형

해관 상품 분류	1904100000 팽화식품(膨化食品)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7401-2014 팽화식품(膨化食品) 상세분류: 기름 비함유형 팽화식품(非含油型膨化食品)
국가표준 규정 제품 정의 및 속성	팽화식품: 곡류, 서류, 두류, 과채류 혹은 견과, 씨앗류 등을 주요 원재료로 팽화공정을 통하여 만든 조직이 얼기설기하거 나 바삭바삭한 식품 - 기름 비함유형 팽화식품: 제품에 식용유지를 첨가하지 않 거나 분사하지 않은 팽화식품

2)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규정) 확인 및 검역 항목 분석

(1) 관능검사 지표

<표1>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1> 관능검사 지표

항목	지표
색과 광택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을 가져야 함
냄새와 맛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이취가 없어야 함
상태	곰팡이가 없고 정상시력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2) 이화학 지표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7401-2014 규정된 이화학 지표

<표2>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2> 이화학 지표

항목	지표
수분/(g/100g) ≤	7

(3) 오염물질 지표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2-2017 중 적용 품목 분류: 팽화식품

<표3>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3> 오염물 지표

항목	지표
납(Pb)/(mg/kg) ≤	0.5
주석(Sn)/(mg/kg) ≤ #주석이 내포장지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 한함	250

(4) 미생물 요구사항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7401-2014/GB29921-2013 중 품목 분류: 익힌식량제품

<표4>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4> 미생물 지표

항목	시료의 수		지표(CFU/g)	
	n	c	m	M
균락총수	5	2	10^4	10^5
대장균군	5	2	10	10^2
살모넬라균	5	0	0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2	10^3
주: n- 하나의 로트에서 채취해야 하는 시료 수 c- 최대 m 수치를 초과할 수 있는 시료 수량, 해당 수치보다 높을 시 불합격 처리 m- 시료 중 최대 허용 가능 수준의 제한량 수치(CFU) M- 시료 중 허용되지 않는 미생물 제한량 수치(CFU), M수치보다 크거나 같은 시료는 불합격				

3) 통관/검역 이슈 사항

<2020년 연간 HS CODE 19041000.00 불합격 사례>

해당 월	총 발생 건수
1월	1
2월	0
3월	0
4월	3
5월	12
6월	0
7월	0
8월	0
9월	4
10월	5

해당 월	총 발생 건수
11월	1
12월	1
합계	27

출처: 중국해관총서

<2020년 연간 HS CODE 19041000.00 중 불합격 사례 유형>

유형	건수
미생물	9
성분	8
라벨, 포장 불합격	5
수분 초과	3
수입 허가 없음	1
기타	1

4) 성분검토

<식품첨가제 및 영양강화제 심의 근거>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GB2760-2014 중 적용 품목: 팽화식품 (膨化食品)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양강화제 GB14880-2012 중 적용 품목: 팽화식품 (膨化食品)

<전성분 배합표 기준 심의 결과>

성분명		함량(%)	성분 관련 규정	첨가 가/부
한글	중문			
현미	糙米	비공개	일반식품 원료	가능
백송고(표고버섯)	香菇	비공개	일반식품 원료	가능

검토의견

- 모든 성분 첨가 가능

3. 최종 평가 및 권고 사항

1) 제품 성분 및 한글 기재사항

- 제품 성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포장에 해당 문제 수정 권고
- 중문 상표, 한글 상표의 중국 상표 출원 권고(aT현지화 지원 사업 중 상표출원 지원 신청)

2) 검역 기준 및 통관 유의 사항

2020 년 연간 해당 HS CODE 19041000.00 불합격 사례 중 미생물 초과 검출 및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성분으로 인해 불합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사전 검사 및 검토 필요. 또한 라벨, 포장 불합격, 수분 초과, 수입 허가 없음 등 원인으로 인한 불합격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

4. 기타 참고사항

수입식품 위생검역증명서란?
수입식품은 해관 신고 후 서류심사, 정밀검사 등 검사 유형에 따라 검사 결과가 합격일 경우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통상 "위생검역증명서" 라고 함)"을 발급받아야 중국 내 합법적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증빙이 "중문라벨", "포장디자인", "품질안전" 등에 대한 완전한 "검사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정상적인 수입 신고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통관된 화물" 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유통 시 잘못 작성된 "중문라벨" 로 인해 문제가 될 경우 수입식품 위생검역증으로는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식품유형, 성분, 포장디자인에서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검토된 경우 aT 현지화 지원사업의 "라벨링지원사업" 을 이어서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检验检疫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编号: [REDACTED]

收货人	[REDACTED]		
发货人	[REDACTED]		
品名	[REDACTED]	报检数/重量	[REDACTED]
包装种类及数量	***饲料***	输出国家或地区	韩国
合同号	[REDACTED]	标记及号码 M/M	
提/运单号	[REDACTED]		
入境口岸	青岛港		
入境日期	2019年12月20日		

证明

品名	品牌	规格	数量(箱)	生产日期	原产国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签字:  日期: 2019年12月20日



[5-1(2018.4.20)*2] ① 货主收执 

<수출 사전 준비 단계 필요 서류 목록>

서류 목록	비고
1. 제품 종류 별 외포장지 확장 전개도 디자인파일	확대 시 깨지는 글자, 그림이 없어야 하며 선명 한 것으로 실 수출 시 제품의 외포장지와 반드시 동일 한 것으로 제공
2. 전성분 배합 비율표	업체 자체 작성 후 인장 날인
3. 제조공정도	간략하게 도식화

서류 목록	비고
4.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필수 항목에 대한 것, 혹은 영양성분표로 대체 가능
5. 외포장지에 각종 인증마크,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인증서의 사본	- HACCP, LOHAS 마크 -> 해당 인증서 사본 - 기타 로고 -> 로고가 인증마크일 경우 인증서 사본
6. 중국 내 상표출원 신청 수리서 혹은 출원증명서	중문라벨에 한글,영문 등의 상표를 삽입할 경우 aT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상표출원 지원 가능함
7. 생산일자/유통기한/보관온도/주의점	# 제품 생산일자 표기 위치 - 예) 포장지 앞면 상단, 뒷면 하단 등에 20161215 와 같은 표기 방식 명기된 위치 확인 # 제품 유통기한 - 개월 수로 확인 (12개월, 24개월 등), 외포장지에 별도 인쇄되어 있을 경우 표기 위치 별도 확인 # 한글 표기사항과 중문라벨 기재 사항 불일치로 불합격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의
8. 보관온도 및 특별 보관, 관리를 요할 경우 기재	- 영하 18℃ 냉동보관, 0-10℃ 냉장보관, 상온 보관 등 기타 주의 점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 등
9. 제품의 실물 사진	- 제품별 외관 앞, 뒷면 사진 - 한국어 라벨이 인쇄된 부분 사진(전성분배합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 제공한 외포장지 전개도와 일치하는 지 확인) - 생산일자, 유통기한이 인쇄된 부분의 사진 - 내용물의 사진(제품을 꺼내서 실 내용물을 촬영)

<실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순	선적서류 준비 항목	발급처	비고
1	HS CODE 확정	-	자문기관 의뢰
2	패킹리스트/인보이스/계약서 B/L발급	수출업체 직접 작성 화물 운송 항공/해운사	중국 해관 제출용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한상공회의소-일반/특혜 관세청-특혜	

순	선적서류 준비 항목	발급처	비고
4	영문 위생증명서 발급	일반 농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	동/식물검역증 발급(일부품목)	농림축산검역본부	
6	성분배합 비율표 제조공정도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외포장지라벨번역본 중문라벨(CCIC인증서)	중국 식품수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구비 완료 권고	

※ 본 보고서는 작성 당시의 실 수출 시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수출 전 혹은 자문 완료 후 6개월이 초과된 경우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해 재 문의를 권고합니다.

끝